

계획설계

Schematic Design

鄭基澤 / 종합건축사사무소 나우건축
by Chung Ki-Taeg

모든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협회에 계획설계 등록창구를 신설하여 의뢰받는 모든 설계 내용을 등록하게 한 후 중복되는 경우는 즉각 단체회원에게 통보하고 협회차원에서 의뢰인에게 Penalty를 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으며 건축사업무 보수기준에 확실히 계획설계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여 정상적인 설계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사 각자의 힘보다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회에 동참하여 응집된 한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상황 -1

오늘도 사무실에 Developer라 자칭하는 몇몇 손님들이 찾아와 도시 계획확인원 등 서류를 내보이며 계획설계를 부탁한다.

건물의 기능과 성능을 얘기하기 전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건폐율, 용적률을 요구하며 장황하게 사업의 전망, 계획들을 설명하면서 설계안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최대한 빨리해 주도록 요구한다.

상황 -2

몇년전 설계를 해주었던 건축주의 소개라며 서류를 들고 찾아와 자신의 건물설계를 의뢰하려고 하니 자신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계획안을 언제까지 제안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황 -3

모 회사에서 사옥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계획설계안 공모에 참여하여 주었으면 하며 자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건축 계획내용에 대해 협의하자고 한다.

사무소를 개설하여 일해오는 동안 서두의 세가지 상황말고도 수많은 상황들이 전개 되겠으나 그중 일반적인 상황들을 접하고 설계를 추진하며 발생한 나름대로의 얘기를 하려고 한다.

모든 회원들이 항상 대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이 닥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데 ...

계획설계는 모든 건축설계의 시작이며 또한 이 과정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건축의 성격이나 기능, 성능 등의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계획안의 협의과정에서 한두차례의 협의로 최종안이 결정되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는데 그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설계의 과정이 아니던가.

계획과정에서 직원들과의 협의시간은 간단하게 캔맥주라도 마시며 서로의 건축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며 지난일들에 대한 평가와 자성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계획설계는 사무소 수주의 기본이 되고 또한 직원들의 건축을 향한 열정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소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실은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는데 ...

물론 각 사무소마다 계획설계에 대처하는 원칙들이 있기는 하겠으나 많은 회원들이 계획설계과정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 아닌가?

우선 계획은 시작하기전 현장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 (때론 비디오로 촬영하기도 하고) 또 제반법규를 검토하고 Space Program을 작성하여 스케치를 하느라 밤늦게 불을 밝히기도 한다.

계획내용에 차이는 있었으나 어느것 하나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이런저런 대안을 거친후에야 한두가지 안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나는 시간들은 결코 적은 시간들이 아닌것이다.

일차 정리된 안을 의뢰인에게 제안한다고 해도 그안들이 건축주의 요구나 의도에 호응일치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

때로는 의뢰인의 요구와 상관없는 건축사 자신의 독자적인 의지정리가 의뢰인에게 강요되는것은 아닐까도 모르겠고 ... 그야 건축사 각자의 건축언어 표현방법이기도 하겠으나, 정작 이런 모든과정을 겪은 후 설계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다행이었으나 그렇지 못한 채 계획안 자체가 여러가지 이유로 Paper Work으로 끝나게 되면 어찌하겠는지 ...

당연히 의뢰인은 자신의 요구가 충족된 좋은 설계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런 방편으로 설계경기가 이루어 지기도 한다.

계획설계는 건축의 시작이다.

사무소는 설계를 하므로써 자신의 건축언어를 현실화 시키게 되며 또한 그 수입을 가지고 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

우리의 업무보수에는 계획설계비 항목이 없다.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제8조의 기본설계조항을 계획설계로 보는 것이라면 과연 그 보수기준을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설계비를 받는 사무실이 몇이나 되겠는가.

회원들이 모여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각

사무소의 대응방안을 얘기하곤 하지만 아직은 별다른 대책이 없이 계획안만 열심히 하다가 지친 경우가 주변에 많으니 큰일이다.

각 사무소가 이런 계획설계양산 현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니 결국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나름대로 대처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정녕 사무소를 꾸려나가는 과정인가?

물론 열심히 하지않아서 설계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예외이겠으나 나름대로는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해결점을 찾아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의사들은 환자가 오면 접수부터 받고 진료비를 계산하며 변호사들 또한 상담접수를 받아 상담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동안 협회차원에서 여러차례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도 뚜렷한 대책없이 각 사무소의 경험치에 의해 각자 대처하고 있으니 이제 확고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요즈음 부실시공, 부실설계 얘기가 자주 거론되는것은 그 모두가 정상을 벗어난 상태의 무리한 사업추진, 덤핑 등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정상적인 상태로 설계에 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선결과제라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 모든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협회에 계획설계 등록창구를 신설하여 의뢰받는 모든 설계내용을 등록하게 한 후 중복되는 경우는 즉각 단체 회원에게 통보하고 협회차원에서 의뢰인에게 Penalty를 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으며 건축사업무 보수기준에 확실히 계획설계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여 정상적인 설계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사 각자의 힘보다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회에 동참하여 응집된 한목소리를 가져야 한다.